

등록번호	농산물유통과-15553
등록일자	2025. 12. 31.
결재일자	2025. 12. 31.
공개구분	비공개(5)



2026년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 추진계획

농업기술센터소 장		2025. 12. 31.
농산물유통과 과 장		강종순
먹거리지원팀장		한리스
주무관		강경덕
		김래현
협 조		



창원시농업기술센터

(농 산 물 유통 과)

2026년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 추진계획

- 먹거리 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중소·가족농 중심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
-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을 통한 안정적 먹거리 수급

I 추진근거

-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
- 경상남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
-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4조 및 제9조

II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 1. ~ 12.
- 사 업 비 : 75,000천원(도비 12%, 시비 58%, 자부담 30%)
- 사 업 량 : 5개소 * 15,000천원/개소
 - 초과분 사업비 자부담, 사업비 미만 분담 비율별 적용
- 지원대상(모두해당)
 -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 납품 계약(협약)한 농가(예정자 포함)
 -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창원시 소재 농지에서 전략품목*을 재배하는 농업인

【전략품목】

- 감자, 당근, 양파, 마늘, 고구마, 대파, 쪽파, 가시오이, 시금치, 애호박, 양상추, 상추, 고추, 파프리카, 표고버섯, 느타리버섯, 사과, 골드키위, 수박, 딸기, 멜론, 블루베리

* 전략품목 :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기관의 수요가 높은 품목

- 지원기준 :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·저장·선별 시설 등
- 지원내용 : 소규모 비닐하우스, 농업용 관정·관수시설, 저장·선별 시설 등
 - 중소농, 가족농 중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만 지원 가능
(예시) 660㎡ 이하 소규모 비닐하우스, 10㎡이하 소형 저온저장시설 등
 - 지원제외 : 토지 구입 및 부지 조성, 농업기계 및 단순 물류 기자재 (파레트,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자재)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(수송 차량 등)

<유의사항>

- ▶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해당부지 설치가능 여부 필히 확인 (관할 구청 건축허가과 문의)
- ▶ 농지법, 개발제한구역법, 건축법 등 개별 법령 미준수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 환수

III 세무 추진계획

1. 사업홍보 및 신청방법

- 사업홍보 : 시 홈페이지 공고, 이장회의 자료, 게시판 등
- 신청기간 : 2026. 1월중
- 신청장소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서류

(필수)제출서류	(선택)제출서류 * 해당시 제출
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(서식1, 서식2)	① 부지사용승낙서(서식4) ※ 사업예정 부지가 신청자 이외 타인 명의인 경우 제출 ※ 부지사용승낙서의 도장 날인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
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	② 임대차계약서 (임차의 경우, 사후관리 기간 이상 계약된 서류)
③ 견적서 1부	③ 등기사항증명서 (근저당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)
④ 보조사업이력서(서식3)	④기타 증빙서류 (GAP, 친환경 등 인증, 농업관련 교육이수 등)

2. 사업대상자 선정기준

□ 대상자 선정기준

-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행가능 여부
- 학교급식, 공공급식 등 먹거리정책에 따른 농산물 공급가능 여부
- 자부담 능력 등 제반 여건
- 재배환경, 전략품목 해당여부, 인증(친환경, GAP 등) 여부, 농업교육 이수 이력
- 가점대상 : 청년농업인, 연중생산체계(시설하우스) 구축 농업인,
- 감점대상 : 5백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이력(2021-2025년) 횟수 따른 차등감점

【지원 제외】

-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(제재)중인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·조직
- 최근 5년간 지원사업(보조, 융자)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·조직
 - *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(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)
- 최근 3년 동안 본 사업에 대해 사업포기 이력을 가진 전문조직 내 구성원(개별농가, 작목반, 영농법인 등)이 있는 경우
-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본 사업을 기 수혜한 전문조직 내 구성원(개별농가, 작목반, 영농법인 등)이 있는 경우

□ 사업계획 주요 검토사항

○ 사업계획의 적정성

- 재배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 여부
- 생산규모, 품목, 공급계획 등이 적절한지 여부
 - * 지역내 중복투자로 공급과잉 및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신청제한
- 보조금지원시설 관리기간 동안 농산물 공급 협약 유지 가능 여부

○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

-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
- 재배이력 및 생산물 품질의 적합성(친환경인증, QC, 안정성 위반여부 등)
- 사업자의 기술력, 계약(납품) 수행 의지

○ 지역농업과의 연계성

-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규모
-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

□ 사업대상자 유의사항

- 기자재는 KS규격품(표준규격품)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사용
- 시설 설치에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(자가시공 불가)
- 지원단가 및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
- 본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름
- 보조사업 선정 목적으로 허위 회원 명부 작성 시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

□ **사업대상자 의무사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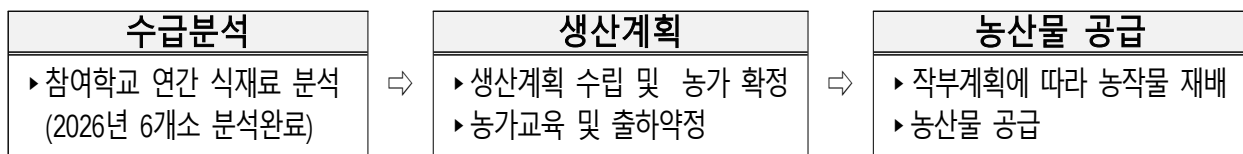
- 창원형 먹거리 정책(공공급식 등)을 반영한 작부체계 수립 및 공급
- 창원시 지정 공공급식 거점물류시설과 농산물 공급 협약 체결
- 먹거리정책 및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컨설팅, 워크숍 등 조직화 육성 시 참석

3.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계획

□ **추진방향**

-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농산물의 품목, 생산량, 생산시기 등을 분석하여 지역농산물 생산계획 수립
- 학교급식의 연중이용 및 소량주문의 소비특성을 감안한 수급계획 마련

□ **추진절차**



□ **세부추진계획**

- 대상 :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 지원농가 23개소
 - 2021년~2026년 : 23개소 지원
- 학교급식 수급분석 및 품목확정
 - 학교수요량 및 수요시기
 - 집중 육성품목 선정(학교수요량 및 창원 연중 생산가능 여부 감안)
- 공급농가 및 생산일정 확정
 - 농가별 생산현황 분석 및 조정
 - 연중공급을 위한 기획생산체계 구축
- 협약체결 및 농가교육
 - 농산물 공급 협약체결(농가-거점물류시설)
 - 교육내용 : 농산물 공급시기, 출하방법,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질 준수 등

4.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

-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시설 및 장비에

대하여 하여 용도와 사용 및 근거당 설정 등에 대해 점검

○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 제한 기준
	부터	까지	
-건물 및 부속설비	준공일	10년간	-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,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)
-기계 및 장비	구입일 또는 준공일	5년간	

※ 기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는 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’ 을 준용

- 보조사업자는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 사업으로 취득, 설치한 시설·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함

IV 행정사항

-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: ‘26. 1월
-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 : ‘26. 2월중
-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: ‘26. 3월 ~ 12월
-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: 사업완료 시

- 붙임 1. 2026년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.
2. 사업신청 서류 1부. 끝.